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통보(시정완료)

제 목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광주광역시 동구 등 [별표 1] 기재 5개 기관
조 치 기 관	광주광역시 동구 등 [별표 1] 기재 5개 기관
내 용	

1. 업무 개요

광주광역시 동구 등 [별표 1] 기재 5개 기관은 「지방세법」 제7조 등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⁷⁹⁾에 관한 자료를 통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조사하여 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⁸⁰⁾을 해당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이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⁸¹⁾”라 한다)를 부과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르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⁸²⁾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

7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관련 [별표 3](번호 105)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매년 6월 5일 및 12월 5일 통보받음

80)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81) 간주취득세 산출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가하여 부과. 이하에서 간주취득세는 이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 의미로 사용함

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

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분만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최초 과점주주가 아닌 ‘과점주주인 주주’(과점주주 지위 유지) 또는 ‘과점주주이었던 자’(과점주주→일반주주→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의 비율이 증가하거나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되 증가된 후의 주식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2015. 12. 31. 이전까지 과점주주인 자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당시 지분이 평생이 아닌 5년 내 최고 지분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다.⁸³⁾

그리고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83) 과점주주이었던 자에 대해서도 2009. 12. 31.까지는 5년의 기간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2010. 1. 1. 이를 삭제하여 평생의 최고 지분율을 따져 증가분을 계산하였던 바, 과점주주인자와 과점주주이었던 자의 지분 증가분을 따지는데 이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규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여 과점주주인 자의 5년 기간제한 규정도 2016. 1. 1.부터 삭제한 것임

금액으로 하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법인의 주식총수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시·구⁸⁴⁾에 소재한 법인 중 2017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⁸⁵⁾이 20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인 법인 653개⁸⁶⁾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LTIS, Local Tax Information System)에 연계된 국세청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비상장법인으로서 과점주주 지분 증가가 의심되는 43개⁸⁷⁾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⁸⁸⁾가 2016. 10. 4. 관내 소재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총수 40,000주 중 26,000주(지분율: 65%)를 취득⁸⁹⁾하여 과점주주가 된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등 237,865,370원을 부과·징수⁹⁰⁾한 것의 적정성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과점주주의 주식변동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거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이를 과다 부과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84) 광주광역시 동구·광산구, 전라북도 전주시·익산시

85)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되어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과 유사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의 크기를 예상할 수 있음

86) 상대적으로 법인 수가 많은 전주시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50억 원 이상(전주시 183개, 광산구 128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법인 수가 적은 익산시 및 광주광역시 동구는 20억 원 이상(익산시 182개, 동구 16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함

87) 전주시 9개, 광주광역시 광산구 11개, 익산시 12개 및 광주광역시 동구 11개 법인

88) 2018. 7. 1.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명칭 변경

89) 2016. 2. 12. 기존주주인 W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후 같은 해 4. 21. 주식회사 ◆◆의 주식 26,000주를 양수

9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2016년 9월 주식회사 ♠♠으로부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하였으니 수시부과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부과

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는데도 간주취득세를 미부과하거나 과소부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주식회사 ♠♠(대표: X)이 2016. 10. 4. 주식회사◆◆(대표: Y)의 지분 65%에 해당하는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데도 부동산 등의 총가액(13,724,960,228원)을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한 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에 주식회사 ♠♠이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147,516,510원(가산세 포함)을 적게 부과·징수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Z)의 주주 Z가 같은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6. 11. 30. 다른 주주인 AA로부터 나머지 50% 지분을 취득하여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최초로 같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AA를 특수관계인으로 오인⁹¹⁾(AA가 Z의 특수관계인이라면 두 주주가 합하여 당초부터 100%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이었으므로 Z의 지분 취득은 과점주주 집단 내부의 지분을 변동에 불과)하여 이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144,672,04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별표 2] “최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누락 명세”와 같이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시·구에서 4개 법인의 최초 과점주주가 간주취득세 등 계 490,993,21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나.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하였는데도 간주취득세 미부과

9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주주 1인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의 관계에 해당하면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Z는 다른 주주인 AA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법인인 ♥♥영농조합법인의 직원으로서 AA는 Z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둘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A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용인이자 Z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익산시는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AB)의 과점주주 AB 등이 2014. 10. 31. 등 이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98.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존 80.82% 대비 17.68%p가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30,158,95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등 이를 포함하여 [별표 3] “지분증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누락 명세”와 같이 익산시 등 2개 시·구에서 2개 법인의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지분 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 계 39,602,30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다.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다 부과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AC)의 과점주주 AC가 2015. 1. 10.까지 같은 회사 지분의 70.79%를 보유하고 있다가 같은 날 주식을 취득하여 99.24%로 지분율이 증가한 데 대해 2017. 4. 10. 증가분인 28.45%p에 해당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122,749,3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AC는 지분 증가일인 2015. 1. 10.의 5년 내인 2010. 3. 25.까지 77.11%(특수관계인인 AD의 지분 0.82% 포함)를 보유했던 과점주주이므로 증가 직 전 지분율 70.79%가 아닌 5년 내 최고 지분율인 77.11%와의 차이인 22.13%p(99.24% - 77.11%)에 해당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당시 기준으로 5년 내 최고 비율과 비교하여 증가분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

하여 28.45%p 해당분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6.32%p(77.11%-70.79%) 만큼 과다 부과하였다.

그리고 이를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별표 4]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다부과 명세”와 같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2개 법인⁹²⁾에 대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계 46,972,64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과다 부과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광주광역시 동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2018년 6월 수시분으로 과소 부과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여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전주시 덕진구 및 익산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과소 부과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또한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과다 징수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환급 조치하고 향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시 과세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과소 부과된 취득세 등 147,516,510원을 과세예고 후 부과·징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가 2018. 6. 1. 주식회사 ♣♣와 ◇

92)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대해 간주취득세 계 154,115,390원을 부과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2018. 6. 14.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에 대해 간주취득세 등 계 46,972,640원을 환급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에 대해 간주취득세 등 158,894,520원을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익산시장은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와 ★★영농조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간주취득세 등 계 70,069,090원을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①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에 과소 부과된 간주취득세 등 147,516,510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주식총수에서 제외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을 과소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취득세 등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업무 부적정 명세

(단위: 원)

연번	기관명	유형	과소부과미부과액	과다부과액
계		3개 유형	530,595,510	46,972,640
1	광주광역시 동구	소계	154,115,390	46,972,640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는데도 간주취득세를 미부과하거나 과소 부과	144,672,040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하였는데도 간주취득세 미부과	9,443,350	
2	광주광역시 광산구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다 부과		46,972,640
3	전주시 덕진구 ^{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는데도 간주취득세를 미부과하거나 과소 부과	158,894,520	
4	익산시	소계	70,069,090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는데도 간주취득세를 미부과하거나 과소 부과	39,910,140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하였는데도 간주취득세 미부과	30,158,950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는데도 간주취득세를 미부과하거나 과소 부과	147,516,510	

주: 도세인 취득세에 대한 전주시장의 부과·징수 권한이 「전주시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청장에게 재위임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최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누락 명세

(단위: 원)

지자체	해당 법인명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 경위	예상부과세액 (가산세포함)	비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	Z	Z는 (주♣♣)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6. 11. 30. 다른 주주인 AA로부터 나머지 50% 지분을 취득하여 100% 지분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이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미신고	144,672,040	AA를 특수관계자로 오인하여 미신고
전주시 덕진구	(주◆◆)	-	-은 2016. 7. 6. (주◆◆)의 지분 90%에 해당하는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이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158,894,520	-
익산시	(주○○)	- (주)	- (주)는 2016. 9. 30. (주○○)의 지분 66.1%에 해당하는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현물출자분 5.94%를 누락한 60.16%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세만 신고납부	39,910,140	현물출자된 부동산 등은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물출자 지분에 대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해당분 미신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	(주♠♠)	(주♠♠)은 2016. 10. 4. (주◆◆)의 지분 65%에 해당하는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는 부동산 등의 총가액(13,724,960,228원)을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한 주식총수로 나는 가액에 (주♠♠)이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	147,516,510	(주◆◆)의 주식총수 40,000주 중 (주♠♠)이 보유한 26,000주 외 나머지 주식 14,000주(지분율: 35%)는 (주◆◆)가 보유한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
계	-	-	-	490,993,210	-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지분증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누락 명세

(단위: 원)

지자체	해당 법인명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 경위	예상부과세액 (가산세 포함)
익산시	★★영농조합 법인	AB 등	★★영농조합법인의 과점주주 AB 등은 2014. 10. 31. 등 이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98.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존 80.82% 대비 17.68%p가 증가하였는데도 증가분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미신고	30,158,950
광주광역시 동구	◆◆(주)	-	-은 ◆◆(주)의 지분 35%를 소유하여 특수관계자인 배우자 -의 지분 45%를 합한 80% 지분의 과점주주이었다가, 2016. 3. 31. 지분 20%를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이 80%에서 100%로 20%p 증가하였으나 20%p에 해당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미신고	9,443,350
계	-	-	-	39,602,3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4]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다 부과 명세

(단위: 원)

지자체	해당 법인명	납세의무자	과다 부과 경위	예상환급세액 (환급가산금 포함)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	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는 2015. 1. 10.까지 (주)○○○ 지분의 70.79%를 보유하고 있다가 같은 날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99.24%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나 이를 미신고함에 따라 2017. 4. 10. 주식 증가분인 28.45%p에 해당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122,749,36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함 그러나 AC는 5년 내인 2010. 3. 25.까지 배우자 지분을 포함하여 77.11%를 보유했던 과점주주이므로 6.32%p(77.11%-70.79%)만큼 과다 부과됨 	27,749,740
	(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 2015. 6. 5.까지 (주)□□□ 지분의 49.55%를 보유하다 같은 날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56.22%의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이를 미신고함에 따라 2017. 2. 10. 5년 내 최고 지분 50.19%보다 증가한 6.03%p에 해당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18,836,740원을 과세함 그러나 1988. 7. 20. 위 법인의 설립당시 -과 특수관계자 지분을 모두 합쳐 92%의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였으므로 위 6.03%p 해당분은 과세대상이 아님 	19,222,900
계	-	-	-	46,972,64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